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2. 6.(금)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3차, 제4차, 제5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3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제4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안건> 1건, 제5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국회에서 요구한 회의록·속기록 제출 의결

○ 최성준 위원장

- 국회에서 2013년 OBS경인TV 재허가 관련 회의록, 속기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OB경인TV의 의견진술 부분은 법인의 명예훼손과 이익 침해를 우려하여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회의 내용 중,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언위원과 사무국 보고자, 심사위원의 성명, 그리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을 음영처리하여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OBS경인TV(주)의 재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5-06-00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OBS경인TV(주)의 재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OBS경인TV(주)의 재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기로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경인TV(주)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 '13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14년 상반기 증자계획 중 증자 미이행 금액 39억 5,000만원을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이행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에 상응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증자이행 기한일 도래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OBS경인TV(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위반내용입니다. OBS경인TV(주)는 재허가 조건에 따라 '14년 상반기 내에 50억원을 증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피심인의 의견입니다. '14년 상반기 중 증자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책적 지원 미비 등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재추진하여 당초 계획 50억원 중 10.5억원의 증자를 이행하였는데 '14년 말 현재 상황에서 추가 증자는 어려우며, 결합판매지원제도 등 정책개선 이후 추가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OBS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향후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액출자자가 책임지고 차질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법률·회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무국의 검토의견입니다. OBS경인TV(주)의 증자관련 재허가 조건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OBS경인TV(주)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계획을 고려하여 부과된 것입니다만 '14년 상반기 내 50억원 증자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10.5억원 증자만을 이행함으로써 증자규모 및 이행시기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4년 상반기 증자계획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항으로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부과의 취지와 추가증자 이행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체방안까지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즉, '14년 상반기 증자계획 중 증자 미이행 금액 39.5억원은 가능한 짧은 기간인 3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증자에 상응한 금액만큼의 자금을 추가 확보하는 조치방안 등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OBS경인TV(주)의 시정명령을 곧바로 통보하고 5월 초쯤에는 시정명령 이행실적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공익적 민영방송으로 출범한 OBS가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OBS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를 조정하고 있고 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별개로 OBS의 증자계획은 제가 알기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OBS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전문가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OBS가 증자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제시했고 또 무산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잠식률이나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 추가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자를 위한 시정명령이 요구된다는 것이 골자이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회도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정명령(안)을 올린 것입니다. 저도 지금 시점에서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더 늦기 전에 OBS 경영진들과 대주주들에 대해 증자계획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할 것은 3페이지 피심인 의견 첫 번째 줄에 보면 '증자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책적 지원 미비 등으로 무산되었고', 그 밑에 '현재 상황에서 추가 증자는 어려우며, 결합판매지원제도 등 정책개선 이후 추가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지금 OBS가 어렵게 된 것이 정책적 지원미비이고, 그래서 결합판매지원제도와 같은 정책개선이 있어야 추가증자를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인식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고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OBS가 경영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OBS 경영진들, 그리고 대주주도 현재 OBS가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원들 인사나 제작과 관련된 투자계획들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대주주가 직접 개입을 하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대주주와 주요 경영진들의 경영상 책임, 이 부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OBS의 경영혁신이 충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OBS에서 건의하는 정책건의서만 받고 검토하지 마시고 한번 OBS의 경영실태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영에 개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안건을 검토하면서 2013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자료집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매출액을 무슨 무슨 항목으로 정리하라고 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에는 광고와 협찬, 방송프로그램 판매와 콘텐츠 판매수익, 기타 방송사업 매출, 그리고 기타 사업 매출액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OBS의 경우 2013년 매출액 348억원 가운데 광고가 81%인 281억원이고, 콘텐츠 판매는 2%인 8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타수익은 0%, 정확히 수치로 이야기하면 1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100% 자체 제작하는 OBS와 SBS 프로그램을 수중계하는 지역민방과 수평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

니다. KNN 같은 경우 매출액 573억원 가운데 광고매출은 312억원 54%에 불과합니다. 사업협찬이 12%가 되고, 기타에 보면 184억원이 전체 매출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구방송의 경우 기타수익이 23%, 광주방송도 12%, 대전방송 20%, 전주방송 36%, 울산방송 35%입니다. 심지어 강원도의 G1 같은 경우도 21%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기타수익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OBS가 충분히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봤을 경우에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더욱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당기순손실 규모에 있어서 '13년 말에 41억원 적자였던 것이 작년은 가결산이지만 32억원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았느냐는 것도 엿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 대주주나 경영진의 노력 부분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OBS에서 하는 이야기는 방송법 제한사항은 대주주 4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수관계자라고 해서 39.1%가 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기들이 증거를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이 참여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의 조건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책적 지원을 이야기합니다만 제 생각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경영진과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방송이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어떤 정책적 방안이 있는지 그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저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송정책에만 의존해서 현재의 경영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은 말 그대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경영진들이나 회사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현재의 위기가 타결될 가능성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노력과 동시에 현재의 경영진들의 경영혁신, 그리고 자구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영 혁신 명목으로 해서 인력 구조조정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OBS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많은 관심을 끌어왔고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어서 지난번 재허가 심사 때 심사위원들의 의견으로 증거를 하도록 조건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계획을 방송사업자 측에서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놓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아서 시정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의결안에 올라온 대로 증거 이행뿐만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증거에 상응한 조치방안을 따로 마련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은 매우 좋은 시정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우선 동의합니다. 저는 처음에 방송사업자도 그렇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증거계획으로만 재무

건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걸었는지가 최근에 방송 경영진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영진 측 이야기는 현재 방송사 운영하는데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 직원들 급여를 밀린 적이 없다, 그리고 경영 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렇다고 직원을 해고한 적도 없다, 매우 어렵게 고생하면서 노사가 합의해서 이끌어가고 있고, 부채는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광고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져 적자가 되긴 했지만 적자상태가 좁아지고 있어서 경영을 잘해 나가면 그 부채 같은 것도 다 갚고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OBS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몰락하거나 퇴출할 그런 방송사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문이 나 있는지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충분히 경영해서 현재의 재무악화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적자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정책당국으로서 아까 심결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정책지원을 잘해 주어야 조건부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정확한 인용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역시 방통위가 다양한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방은 탄생할 때부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민방들이 경영이 어렵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지역의 OBS의 경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경인지역민들의 애착심이라고 할까, 또 그 지역 시민단체 대책기구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치는 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은 내릴 수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정무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조치 이전에 정무적으로 방송사업자뿐만이 아니고 경인지역민, 경인지역 시민단체 대책기구와 한 번 더 협의를 가지고 개선방안이 없는가를 찾아봐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아주 오래 되어서 지금 행정적으로 시정명령을 안 내릴 수 없다는 의견에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책당국도 지원해주고 또 방송사업자 측도 경영 정상화, 합리화에 좀 더 노력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지역 시민단체들도 함께 힘을 합해서 여러 단위가 협력해서 OBS의 경영개선에 힘을 모으면 충분히 극복,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작년에 적자 41억원인데 작년 세월호 참사의 상황에서도 적자폭이 10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적자폭을 많이 개선한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OBS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당국 여러 단위가 협력해서 OBS의 경영개선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고, 우선 오늘 여기에 내놓은 시정명령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OBS 경영진이 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의 소유지분 제한을 풀어서 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파배분료, 광고배분료와 결합판매비율을 조정해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이 있지만 그것 역시 다른 방송사들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 꼭 짜여진 틀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줄 알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원방법으로 무엇이 있는나? 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이런 방송사의 재정난,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집중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지원하는 것이 너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방송을 위한 자막 경비나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별 제작 지원하는 것을, 법규를 고치지 않고도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들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의 정책지원을 통해 OBS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견을 달아서 오늘 제안된 이 시정명령은 최소한의 조치이고 그 이후에 한 번 여러

단위가 모여서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OBS 자체의 자구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은 잘 아시지만 저희가 어려운 곳이 발생했다고 해서 임의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또 OBS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방송 측에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송사들과 관계된 부분으로 인해 저희들의 지원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OBS 측에서 적절한 대응방안, 제일 좋은 것은 증자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1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 ‘201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방송기반국장 김재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실시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방송시장 현황과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의 권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평가절차 및 방법입니다. 먼저 단위시장을 확정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며, 자료 수집 및 측정, 그리고 분석 및 평가의 단계로 진행하되, 방송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자료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및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자료를 활용하고, 방송사업자 및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위시장별 경쟁 활성화 정도를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평가 대상 시장 및 확정사항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의 거래관계를 대상으로 방송시장을 구분하여 먼저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시장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시장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방송 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대체성, 지리적 범위, 거래의

특수성, 이용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 평가단위 시장을 획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도표>를 보겠습니다. 세부 평가단위 시장을 살펴보면 유료방송시장은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세부적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으로 나뉘어 구분하고 방송채널거래시장은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과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은 외주제작 프로그램 시장으로, 방송광고시장은 전체 방송광고시장과 지상파방송사 광고와 지상파를 제외한 일반방송 광고시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방송시장 규모입니다. IPTV, 종편 및 홈쇼핑 PP 등의 성장으로 '13년 기준 방송시장 전체 규모는 전년대비 6.3%가 증가한 14조 300억원이며, 성장률은 전년보다 둔화되고 있습니다. SO 가입자는 소폭 감소했으나 IPTV 가입자가 33.9% 증가한 871만으로 유료방송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12년 2,332만에서 '13년 2,540만으로 8.9%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표>에 방송사업 매출액 및 사업자군별 점유율 추이를 보면 계열PP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은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PP와 IPTV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3년에 PP는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집중도 측면을 살펴보면 조금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IPTV, 종편PP 등 신규사업자 등장 이후 유료방송 플랫폼의 방송구역별 가입자 집중도, PP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및 시청률 집중도, 방송광고시장의 집중도는 모두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시장의 변화는 IPTV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판매되는 IPTV의 성장세에 따라 방송과 초고속인터넷 결합 가입자가 늘고, 최근 이동통신도 함께 결합한 가입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유료방송시장은 IPTV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43.1%가 방송 및 초고속 포함 결합상품에 가입 중이며, 이 중 이동통신도 함께 결합한 비중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27.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종편 및 주요 MPP 등의 활성화와 방송광고시장 침체 등 최근 방송시장 관련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채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일평균 TV채널 시청시간 중 지상파 비중은 '12년 56.1%에서 '13년 53.6%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CJ계열 PP의 비중도 7.6%에서 7.1%로 감소했습니다. 종편채널의 비중은 반면에 5.2%에서 9.7%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TV광고매출액도 보면 종편채널 비중은 5.1%에서 7.3%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장별 주요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방송시장입니다. 유료방송시장은 SO, 위성방송, IPTV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가입자를 확보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유료방송 플랫폼 간의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가입자에 대한 지배력 행사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입니다.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디지털 서비스 가입자의 비중이 66.2%로 증가하고 있으며, 77개 방송구역별로 1위와 2위 사업자 간의 점유율 격차가 줄어드는 등 시장집중도는 완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SO가 72개 구역에서 가입자 1위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IPTV 가입자의 증가세가 지속되어서 전국 가입자 수 1위인 KT계열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초로 1위를 차지한 구역이 인천 옹진군 등 5개 지역이 나타나는 등 IPTV 진영과 SO 진영 간의 격차는 좁혀지는 중입니다. 디지털유료방송시장에서는 KT 이외 IPTV 업체들의 가입자 증가세와 SO의 디지털전환 지속으로 KT의 시장점유율은 '12년 44%에서 '13년 41.1%로 하락하여 시장집중도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결합판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13년 말 현재

1,094만명으로 이 중 KT가 495만명으로 점유율 1위, 다음으로 SK, LG 순이며, SO는 전체 사업자가 2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가입자 수는 '13년 말로 282만명으로 초고속 포함 결합가입자의 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2014년 3월에는 SK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KT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VOD 매출 증대입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13년 VOD 매출액은 4,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5%가 대폭 증가했으며, 수신료 매출에서 VOD가 차지하는 비중도 '12년 13.3%에서 '13년 17.7%로 4.4%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 관련입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행태를 조사한 바 관련 설문 응답자(660명) 중 63.2%가 유료방송서비스와 OTT서비스가 유사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OTT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유료방송서비스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OTT를 유료방송의 보완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유료방송시장이 경쟁상황평가...

○ 이기주 상임위원

- 잠시만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시사점 위주로 설명을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차피 자료는 다 공표가 되는 것이니까 보고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과 시사점 위주로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상황평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의 일환으로 방송상품을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등과 묶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요금할인이나 경품 제공 등의 공정경쟁 제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확대가 플랫폼 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에 미칠 부정적 요인이 없는지, 즉 이통시장의 시장지배력이 방송시장에 전이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IPTV가 1인당 방송사업매출은 SO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향후 IPTV사업자의 수익구조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월 수신료 기반 가입자당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VOD 이용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소비자와 PP 등 유료방송 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방송채널거래시장입니다. 방송채널공급자인 지상파 및 PP와 수요자이며 플랫폼사업자인 SO, 위성, IPTV 간의 방송채널 재전송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사점 위주로 보고 드리면 종편 등 신규 유료방송채널의 진입과 성장으로 인해 경쟁적 시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 PP 프로그램사용료 배분에 있어서 지상파 재전송 대가 및 종편채널 배분액 증가 등이 미치는 영향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3사와 주요 유료방송 플랫폼 간의 재전송 계약 종료에 따라 관련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재전송권 대가 수준에 대한 사업자간 분쟁이 재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주요 MPP 방송채널사용료 수익 점유율 추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입니다. 이것은 외주제

작사와 지상파 및 PP 수요자 사이에 방송프로그램 방영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사점을 살펴보면 수요자인 방송사보다는 공급자인 외주제작사 수가 훨씬 많고 상당수의 공급자가 영세하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요 독점력이 발생하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요집중도가 계속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시장 상황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공급 측면의 외주제작사의 경쟁력 강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광고시장입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시장을 편성해 준 대가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사점은 TV광고시장은 규모가 점차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른 방송사의 수익성 악화는 채널 간 시청률 경쟁 심화뿐만 아니라 지상파·PP 등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채널 사용료 배분 등 분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방송시장 규모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금년 3월까지 보고서를 완성하여 201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하나 확인할 것이 8페이지 제일 아래 <주요 MPP 방송채널사용료 수익 점유율 추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주요 MPP에 씨제이 그리고 MBC, SBS, KBS는 각 계열 자회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김재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그 아래 중앙일보가 있는데 왜 중앙일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 김재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중앙일보 계열PP들이 있습니다. Q채널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앙일보가 출자한...

○ 최성준 위원장

- MPP 중의 하나로 표현을..., <표>가 옆으로 약간 길어지더라도 '계열PP'라는 표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쪽 해 왔을 텐데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201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2015년 2월에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2013년도의 여러 통계자료를 가지고 방송시장경쟁상황을 평가한 것이지요?

○ 김재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2015년 2월에 이런 자료를 보여주고 있으니 그리고 제목도 201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라고 하니 혹시라도 이것을 '2014년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이구나'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매년 연도를 이렇게 붙여 왔던 것 같은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인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2014년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한,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올해 연말 이전에 이것을 정리해서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자료를 보는 분들이 오해를 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연도 붙이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 보면 2013년도 말의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보는 분들은 제목을 보고 그렇게 인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에 안건에서 제가 의견을 이야기 안 해서 그때 이야기할 시간 보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번째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이것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두어 차례 했을 때 첫 번째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201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라고 하기에는 보고서가 나가는 시점과 2년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 초기에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 집행 과정이나 용역과제 수행 절차상 그것이 또 가능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독자들은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법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경쟁상황평가가 종료된 후' 이것이 좀 모호합니다. 얼핏 지난번에 3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법 규정을 보니까 꼭 3월까지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작년 3월에 냈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가가 종료된 후라는 것을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사실 앞에서 보고 드렸습시다만 재산상황공표집, 방송산업실태조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방송사업자들의 회계보고서도 3월 말 시점에 완료되고 이것을 저희가 입수하는 것은 거의 하반기이기 때문에 평가 종료시점은 위원회에 보고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보통은 보고서 제출시기라는 것이 3월 말까지라든지 연도 종료 후 몇 개월까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을 '국회보고'라고 딱 한 줄로 씁니다. 그런데 앞에 경쟁상황평가 목적을 이야기하실 때 저도 법을 보니까 평가 개요의 목적에 보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

습니다. 그리고 법에 봐도 뭐라고 되어 있으나 하면 제35조의5제1항에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도 두고 이런 경쟁상황평가보고서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향후 계획을 보면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통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방통위 전체로 보면 경쟁상황평가를 하기 위해 오늘 KISDI에서도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연구자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여서 작업한 결과를 보고서로 내는 것 자체도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경쟁상황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계획에 오늘 보고안건에 이렇게 쓰는 것은 좋지만 방통위 전체, 내부적으로 관련되는 국·과, 위원님이 같이 경쟁상황평가 중 특히 시사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집중 검토, 토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왜 그런 토론, 검토를 해야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경쟁 활성화, 경쟁 촉진을 하기 위한 현재의 법·제도가 미비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런 측면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독립외주제작사처럼 다수의 아주 영세한 이런 공급자들이 있어서 수요 독점적인 시장이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영세한 독립제작사들을 진흥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공정경쟁이나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우려가 되거나 미흡하다고 예상되는 시장 내지는 사업자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나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상 나와 있는 미디어법까지 포함해서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저는 그런 3가지 측면에서 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대해 방통위의, 특정 국·과가 아니라, 관련된 모든 국·과와 위원님들과 좀 더 심층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가지의 경쟁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3가지의 조치를 액션으로 연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평가 결과 국회 보고' 이것으로써 저희의 오랜 작업의 결과가 마침표가 될 수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ISDI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미국의 FCC나 영국의 오픈마켓에서 섹터별로 방송이든 통신이든 인터넷 관련이든 이것처럼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연차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 박동욱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FCC에서는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유료 방송 다채널 제공 사업자)보고서가 매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VPD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경쟁상황평가의 체계는 아니고 마켓 리뷰(Market Review)에 가깝습니다. 지분관계나 MSP 관계 등 시장현황을 나타낸 보고서이고, 오픈마켓에서는 경쟁상황보고서는 없고 사안별로 해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유료방송 페이TV BskyB에 대한 것이 몇 년 전에 있었고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방송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통신 쪽은 있습니다. 통신 쪽은 EU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리뷰를 해서 마켓 데피니션에 대한 것도 보고 그다음에 지배적인 사업자가 있는지를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와 비슷한 체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가장 최근에 리서치할 기회는 없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미국의 FCC의 모바일 인더스트리에 대한 애뉴얼 리포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애뉴얼 리포트 이려면 1차적인 로데이터(raw data) 위주로, 통계 위주로 보급률이 얼마다, 마켓셰어가 얼마다 이런 보고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경쟁상황평가보고서에 포함될만한 그런 내용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시장에 대한 2차, 3차 분석까지 한 보고서를 제가 수년 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하면서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많이 성장도 된 것 같고, 또 1차적인 단편적인 시장 집중도 HHI 지수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 이외에 한두 단계 더 들어간 분석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자료를 우리가 아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35조의5제3항에 보면 방송사업자에 대해 경쟁상황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된 소관 법률의 조사 근거나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다각도로 되어 있고,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 제재할 때는 더 강한 자료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경쟁상황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규제가 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자료제출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종료된 후 3개월 이내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서 2013년, '14년, '15년 3개년도에 걸쳐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대부분 2013년이고, 일부 2014년 데이터가 있던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4항도 필요하면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박동욱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

- 제가 자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면 방송사업자 회계에 대한 자료가 3월에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 회계자료들이 여기에 기본이 많이 됩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13년도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14년도는 저희가 가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상황실태조사보고서로 PP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최종 완료되고 전체 자료에 대한 검증이 끝나는 것이 11월로 되어 있어서 원래 연말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얼마만큼 저희가 정리해서 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면 시장별 주요 평가결과입니다. 특히 유료 방송시장을 쪽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시장집중도 완화, 그다음에 세 번째 IPTV 진영과 SO 진영간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 제일 밑으로 가면 디지털유료방송시장에서 KT 이외에 IPTV 사업자들의 가입자 증가로 인해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시장집중도가 완화

되고 있다는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조사 분석을 하신 직원 분들이나 연구자 분들이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대단히 고민한 흔적들은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유율의 감소나 시장집중도의 완화가 결코 경쟁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것을 반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현재 시장에서 보면 경쟁은 심화되고, 특히 나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나 하면 방송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부분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나쁜 경쟁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방송과 IPTV 내지는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상품 시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입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야겠지만 현재는 콘텐츠에 대한 저가경쟁 내지는 공짜 마케팅을 통해 여타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쪽에 수익이 증대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치중립적으로 표현해서 시장집중도가 완화되고 있고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자,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 지속적 관찰을 하자는 것은 좋은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을 넘어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방송산업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의 육성이나 방송과 통신산업 생태계에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나 이러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렇게 시장을 4가지로 획정한 것은 자체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리한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유료방송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면 유료방송의 수입원이라는 것이 광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수신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원에 대한 것도 좀 더 우리가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계속 결합상품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융합시대에 방송과 통신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방송의 콘텐츠가 통신시장에 묻혀서 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려면 유료방송시장에 있어서도 광고시장, 그리고 수신료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좀 더 분리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규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합상품이나 수신료시장과 광고시장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도 분리해서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자체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 융합시장에 있어서

는 걸맞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서 돌아가는데 방송시장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통신이 어쨌든 방송시장까지 같이 결합되어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도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니까 보조적으로라도 통신과 방송의 결합상품에 대한 그 수칙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리시켜서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획정에 대해 보조적으로라도 결합상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은 방송 콘텐츠 관련 리포트인데 여기에 국내 콘텐츠의 판매·재판매만 포함된 것이지요? 해외수출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제작비의 경우에는 국내 제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작비는 자체제작, 외주제작 이런 제작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사점을 보면 수요집중도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한계가 있다, 공급 측면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외주제작사의 구조조정이라고 할까, 통폐합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주제작사는 정책적으로 문체부 소관입니다. 이 보고서를 국회에 내는 것 말고 정부 관련부처에도 돌립니까? 왜냐하면 수요자인 방송사는 우리가 정책 관할이고, 공급자인 외주제작사는 문체부 산하인 것 같은데….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관련부처에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관련부처에 함께 회람해서 필요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중FTA 타결 이후 중국 방송콘텐츠 시장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의 자본력, 자본 규모 때문에 콘텐츠 산업이 자본력에 지배당할 위기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산업을 좀 더 자본력을 크게 만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급 측면의 외주제작사들의 구조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 내 관련부처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방송광고시장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방송광고시장의 시장집중도를 완화해 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간단히 도표를 보면 씨제이가 10.7%이고 종편이 7.3%입니다. 씨제이와 엇비슷한, 씨제이에 버금가는 티브

로드도 있고 씨앤엠도 있고 현대HCN도 있는데 여기에 표시를 안 한 것입니까? 많이 떨어
져서 수치를 표시할 수 없는 것입니까?

○ 김재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수치가 낮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아까 이야기한 티브로드나 이런 유료방송사들도 가입자 수라는 것은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가입자 수로 보면 씨제이와 엇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고시장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네요?

○ 김재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광고를 하는 것은 PP시장이기 때문에 티브로드 등은 플랫폼은 크지만 광고시장은 굉장히
적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PP를 중심으로 하니까 플랫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시장 다양성이라고 할까, 집중도 완화
리포트로서 중요성은 여러 방송사, 여러 그룹이 방송광고시장을 분점해야 하는데 몇 개의
큰손들이 지배한다고 할까, 점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약간 기술적이기는 한데 제가 KISDI 박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쟁상황평가가
분석기법이나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
내에서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도 훨씬 오래 전부터 하지만 또 소관이 미래부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전문가그룹에서 경쟁상황평가방법론과 관련해서 토론포럼도 하고, 그리고 해외에
OECD나 FCC, 오픈컴 등 이런 곳의 전문가들과 오늘 이 보고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관한 것도 충분히 그런 국제적으로 전
문가들 내지는 카운터파트(counterpart) 되는 국제기구와 공유해도 저는 그쪽에서 굉장히 관
심 있어 할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경쟁상황평가 틀을 가지고 한다는
것, 방법론에 관해서도 좀 더 타당성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 공유 내지는 교류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동욱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있고, 매년 중요한 결과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거기에서 보시고, 위원님들이 신문·방송을 전공하신 분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표준적인 모델을 볼 수 있는 분들
이 있어서 그분들이 봤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몇 해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쪽과 일을 많

이 하는 경제전문가들과 시장획정 전문가들과 몇 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표준적인 경쟁상황평가 틀에 맞게 개발했다가 방송시장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어서 그것을 조금 수정하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결합판매에 대해서도 시장획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당히 많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상황들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해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15년도에는 조금 더 폭넓게 전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 기본적인 방법에 관한 논의, 또 지금 나온 결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 등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간을 가지고 경쟁상황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로서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올해의 업무계획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정책방향을 잡아갈지, 추후에 빠른 시일 내 논의하는 기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영규 재정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규 재정팀장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합리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하여 징수율 산정 및 면제기준과 통보시기를 정비하고 징수고시 중 권리구제 조항을 상향하도록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면제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징수율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방송운영의 공공성 및 재정상태 외에 방송시장의 경쟁상황과 수익규모를 징수율 산정기준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문내용은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담금 면제기간이 종료된 위성·IPTV 사업자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하되, 재무상태표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면제는 유지하고 소규모·적자사업자(광고매출 50억원 이하, 직전년도 당기순손익 적자 사업자)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납부통보 시기 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방송사업자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행정 소요기간 확보를 위하여 분담금 납부통보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납부기한을 1차 7월 말, 2차 9월 말에서 1차 9월 말, 2차 11월 말로 각 2개월씩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의 환급조항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과·오납금 환급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재부와 법제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상향 입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접수해 주시면 2월 중순부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3월 하순 방통위 의결, 4월 초순 이후에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초순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2페이지 맨 아래 단에 보면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잠식인 상황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한다는 뜻입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자본잠식인 경우에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완전자본잠식인 경우입니다. 부분자본잠식은 퍼센티지로 감경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 세금이나 다른 방송사들이 분담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만드는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내는 회비입니다. 분담금입니다. 그 경영결과에 따라 내고 안 내고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작년에 누누이 토론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대체로 그 방향이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물론 적자인 경우에 부담하기 어려울지 알지만 부담률이 조정될 수 있을 뿐 면제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상파들도 원칙적으로 경영 결과 영업이익, 순이익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고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영결과에 따라 흑자면 내고 적자면 안 내는 그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송사업을 하기 때문에 광고를 수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걷는 것입니다. 저는 경영결과에 연계해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완전한 자본잠식은 재허가, 재승인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방송사업을 양도해야 할 사안이지 방발기금을 면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사업을 할 기본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말 시장 퇴출이라고 할까, 방송사업을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발기금의 징수여부에 대한 원칙을 정비하기 위해 이것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경영결과에 따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완전 잠식되어서 현재 이 호에 해당되어서 면제받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완전 100% 잠식되어서 면제받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현재 없습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마도 김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완전 잠식이 됐으면 그다음 기회에 재허가, 재승인을 받기는 힘들겠지요. 그런데 재허가, 재승인 그 전에 일정한 기간이 있을 테니까 아마도 이 규정의 취지는 그때까지는 어쨌든 방송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도리 없이 방발기금의 부담 없이 그나마라도 조금 수입이 있는 것은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사실상 이 규정이 완전 잠식이 되어서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인데 '결손금이 자본금 완전 잠식인 경우', 이것을 꼭 넣어야 합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입법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법에서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에 따라 분담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징수율 산정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공익성,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징수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에 따라 저희가 시행령을 이렇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개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법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는 우리가 위임받아서 면제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0% 전면 면제가 아니고 부담률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면제사유를 쓰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경우라고 하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고매출액 50억원 이하, 직전년도 당기순손익 적자 사업자, 이것은 중소 영세방송사업자에 대해 배려하는 근거인데 방발기금에 대해 면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담률 0%, 부담률 0.12%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방송사업을 하는 한 비율로 조정을 해야지 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이 재허가 문제와 분담금 면제와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는 많
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시기상이나 실무에 있어서는 그것이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처럼 면제근거를 두어도 일종의 안전판일 수 있고 또 다른 예상치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
률에 면제한다는 근거규정이 있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시행령상의 이 규정은 현재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것을 없애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 징수율 문제는 이번에 개정 대상도 아니지만 법률
에서도 그렇고 시행령에서도 그렇고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시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대로 안이 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그것과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OBS는 완전 자본잠식은 아닌 상태지요?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완전 잠식은 아니고 상당 부분 잠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은 OBS보다도 더 상황이 열악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없지만 만약에 앞으로 그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데 아직 재허가,
재승인 기간은 남아있는 경우에 대한 대비요소의 규정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볼 때는 자본잠식이 완전히 됐을 경우에 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면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해 가면 자본잠식이 다 되면 당연히 0%가 되지 않습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니까 우리가 면제라는 것으로 표현할 뿐이지 감면조항에 따라 그대로 감면을 하더라도
0%가 되니까 당연히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재정팀장

-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렇게 집합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방발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비이고 분담금 성격인데 어느 경우에 면제라는 부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완전자본잠식이다, 그러면 재허가 못 받는 것이지요. 재승인 못 받는 것이지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면제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말하자면 방발기금을 두고 많은 논란이 또 있었기 때문에 법 조문의 문안 체계도 좀 더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법에 면제 또는 경감이라고 해서 면제와 경감으로 구분해서 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어서 개정안을 만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꼭 고치자는 취지는 아니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에 안건에서도 향후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향후 일정을 보니까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포한 날부터 아니면 또 일정 기간….

○ 신영규 재정팀장

- 일단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시행령이 시행되려면 예를 들면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고시 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아도 됩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저희가 지금 규정한 내용들이 새롭게 규정이 됐다기보다는 징수고시에서 징수율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징수율 결정과는 특별히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징수율 고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행령 규정이 반영된다면 납부 통보시한이 2개월 정도씩 연장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징수고시를 최종 확정지어야 하는 시기가 한 2개월 정도 미루어질 수 있는 영향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징수율 결정하는 부분들은 고시 3개월에 회계자료 들어오면 그때부터 해야 하고,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신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통보시기가 연장되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인데 직전년도 적자인 곳들, 그런 부분이 통과가 되면 그때는 고시 구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존에 있었던 사업자들 징수율 정하는 부분들은 계속 하시면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여하간 오늘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 절차적인 내용 같은데 이것에 따라서 금년에 집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언급이 고시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향후 계획에..., 여기는 이 시행령 개정안이 나가서 공포될 때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언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시행령 개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마 향후 일정은 시행령에 관한 향후 일정을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시행령에 따라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시를 매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시에서 징수율을 결정한 이후에 각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아까 김재홍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말씀으로 보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다른 안건이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최근 MBC 상황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MBC 조직개편 문제, 그리고 노사 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2013년 MBC 재허가 당시 권고사항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MBC에 '14년 12월 31일자로 2013년 MBC 재허가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저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면 '귀사가 제출한 '13년 재허가 권고사항 이행실적 및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업무 및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력 운영, 합리적 노사관계 수립·계획 등과 관련하여 '12년 파업 이후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재허가 권고사항에 대한 부과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재허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는 향후 재허가 심사 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할 계획이므로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사무처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MBC의 성과중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조직개편이 노사 갈등 발생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의 전보, 교육발령 등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끼쳐서 자칫 방송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노사 협의와 관련해서는 MBC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노사 협의결과가 실제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MBC의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조치들이 일정 정도 미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MBC로 하여금 저희들의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촉구 공문을 보내고 한 달 만에 지금 또 신참 PD 1명이 SNS에 올린 웹툰을 빌미로 해서 해사행위를 했다고 하여 해고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권고했던 것이나 그 이전에 점검했던 것들이 보란 듯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MBC에 권고했던 사항의 점검이나 이러한 촉구공문을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해고당한 PD가 올린 웹툰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이것이 해고의 이유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웹툰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상식을 크게 어긋난 그러한 표현과 비판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사측이 해고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권 PD의 의견표명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쓰지만 지금의 MBC에게는 좋은 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영진들의 극단적인 징계행위는 스스로에게는 만병통치약일지 모르겠으나 MBC에게는 독이 되는 그러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사내외의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막고 일방 독주하고 있는 MBC 경영진들이 과연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의 공적의식이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현재 경영진들의 경영철학과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은 커녕 분열과 갈등만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수행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적책무 구현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우리 위원회가 MBC 경영진의 전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보낸 지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권고사항 이행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한 번 안건으로서 심의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MBC 경영진들의 일방적인 경영행태는 기본적으로 MBC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봅니다. 즉, 공적책임과 공정한 방송의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나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문진에서 MBC를 효율적인 공적규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켜봐야겠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의 대선공약이었던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문제와 연계해서 KBS의 거버넌스 문제, 그다음에 MBC 거버넌스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2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11시 35분 폐회 】